

「코로나19」 관련

정 부 (경 기 도) 지 원 제 도 및
기 업 애 로 상 담 센 터 안 내

2020. 2.

I. 국가 질병관리본부 1339

II. 경기도

- 긴급연락처 031-120
-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 피해 접수 :
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031-259-6521
- 코로나19 T/F 센터 :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 상담센터 031-259-7760

III. 부처별 상담센터 연락처3

IV. 목 차

[경기도 지원제도]

1. 코로나19 대응 경제T/F4
2.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대책본부 운영5
3.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특별자금 지원6
4. 對중국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 운영7
5. 공공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세 감면·징수유예 검토9
6. 공공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10
7.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에 대한 신속 대응11

[국가 지원제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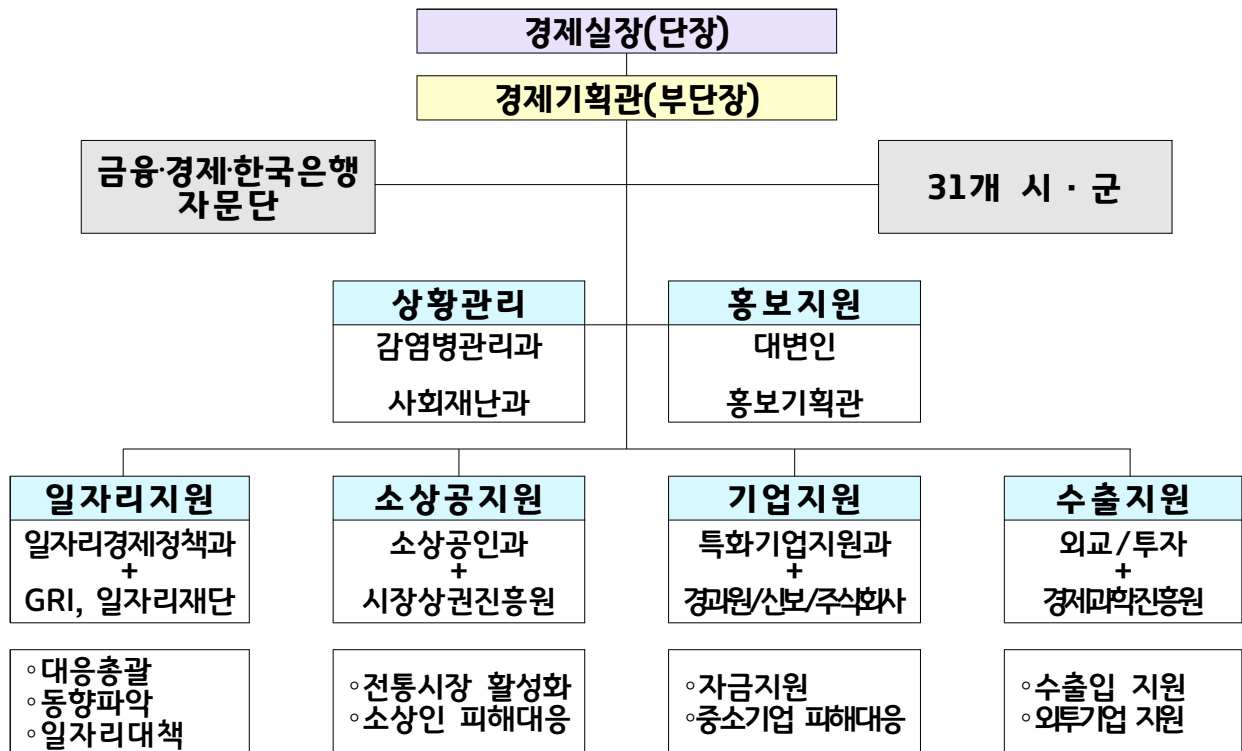
8. [국세청]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12
9. [고용노동부] 고용유지지원금 지원14
10. [근로복지공단] 일하다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..15
11. [중소벤처기업부] 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17
12. [KOTRA] 코로나19 대응 해외바이어 화상상담 지원21
13. [KOTRA] 피해기업 대체공급처 발굴 지원22
14. [금융위원회] 금융부분 지원 방안23

부처별 코로나19 상담지원센터 연락처

연번	부서명	연락처	비고
1	국가 질병관리본부	1339	
1	경기도 콜센터	031-120	
2	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 피해신고센터	031-259-6521	
3	코로나19 관련 피해 상담센터 (경과원 SOS상담센터 內)	031-259-6119	T/F 총괄상담센터
4	경기신용보증재단	031-259-7760	중소기업/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
5	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	031-259-6119	수출입 애로 관련
6	인천세관 수출입지원센터	032-452-3639	
7	KTORA 경기지역본부	031-273-6034	
8	경기중소벤처기업청	031-201-6948	
9	중소기업 국제분쟁 법률지원단	02-2110-3661	

□ T/F 구성

- 운영기간 : '20. 1. 31. ~ 상황종료시
- 운영방법 : 주1회 정례회의 진행 및 필요 시 수시 소집



* 피해사례 접수는 경제과학진흥원(기업, 수출입), 시장상권진흥원(소상공인, 자영업)에서 전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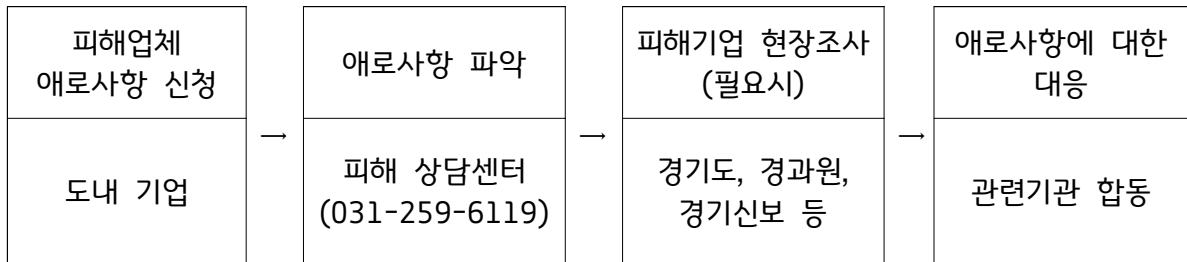
□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시책

【소비·수출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→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활성화 추진】

- (경영자금) 소상공인, 중소기업 등 특별경영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
- (전통시장 이용활성화) 전통시장 이용,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
- (취업알선 활성화) 피해지역 및 업종 취업알선(현장상담) 강화
- (재정지원) 공공재정 조기집행, 공용물품 조기구매
- (세제지원) 지방세 감면, 징수유예
- (수출지역 다변화) 해외 판로개척 지원,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
- (캠페인 및 홍보) 내수살리기 캠페인, 지역내 소비 장려 홍보, 가짜뉴스 엄정 대응

□ 추진계획

- (목적) 중국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입과 경영 애로를 파악하고 신속대응·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책본부 운영
- (추진절차)



- (상담 및 피해내용 접수)

접수처	전화	팩스	이메일
코로나19 관련 피해 상담센터 (경과원 SOS상담센터 內)	031-259-6119	031-259-6244	sos119@gsbc.or.kr

- (피해기업 상담)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수출입, 경영관련 피해내용 및 애로사항 상담, 상담현황 즉시 보고
- (홍보 및 애로내용에 대한 대응)
 - (홍보방안) 기업SOS넷, 관련 중소기업에 이메일 홍보
 - (애로해결) 파악된 애로내용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 대응 및 해결

□ 추진현황

- 피해신고 84건 접수(수출입44, 경영애로21, 마케팅19) ('20.2.24.현재)
 -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5건(반영 1건*), 코로나19 특별자금지원 등 개별 상담 76건 완료, 검토 2건 등

*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이행 자체 시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제외(기재부, 행안부, 2020.2.11.)

□ 향후계획

- 피해기업 개별상담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및 제도개선 건의 지속추진

□ 코로나19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

○ 지원개요

- 지원규모 : 총 2,000억원 (중소기업 1,500억, 소상공인 500억)

※ 확대 운용 : 700억원 ⇨ 2,000억원 (중소기업 1,500억원 / 소상공인 500억원)

☞ (중소기업) 운전자금 중 일반기업 등의 자금배정 내에서 특별지원(2.14.부터 시행)

- (당초) 특별경영자금 200억원 + (추가) 운전자금 일반기업 등 1,300억원 = 1,500억원

- 지원대상 : 도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지원기간 : '20.2.12.(수) ~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(또는 자금소진 시까지)
- 지원실적(2.24.현재 신청액) : 중소기업(172건, 524억원), 소상공인(135건, 51억원)

구분		중소기업	소상공인
자 금	지원규모	1,500억원	500억원
	지원대상	도내 중소기업	도내 소상공인(교육이수조건 면제)
	지원한도	업체당 5억원 이내(기준한도와 별도운영)	업체당 1억원 이내
	융자기간	3년(1년거치 2년균분)	5년(1년거치 4년균분)
	담보	부동산, 보증서, 기타	보증서
	이자보전율	1.5%	2%
	평가방법	운전자금 평가와 동일(평가점수 50점 이상)	보증 평가 준용
	한도사정	매출액의 1/2 범위 내	보증 한도사정과 동일
	대출기관	농협, 우리, 하나, 신한, SC	
보 증	보증한도	업체당 5억원 이내	업체당 1억원 이내
	한도사정	매출액 1/2과 기업신용평가 등급 (CCC등급이상)에 따른 한도 중 적은금액	· (3천만원 이내) 한도사정 생략 · (3천만원 초과) CB등급 또는 소상공인 평가모형에 따른 한도
	보증비율	100% (전액보증)	
	보증료율	0.8% (고정)	

※ (유사지원사례) '15년 메르스피해 관련 특별자금 / 중소기업 112건, 261억원 / 소상공인 1,660건 472억

○ 대출금 상환유예

- 근 거 :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(원금상환유예) 1항
6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(대상) : 자금지원 대상과 동일 / (기간) : 특별경영자금 시행기간과 동일
- 유예범위 :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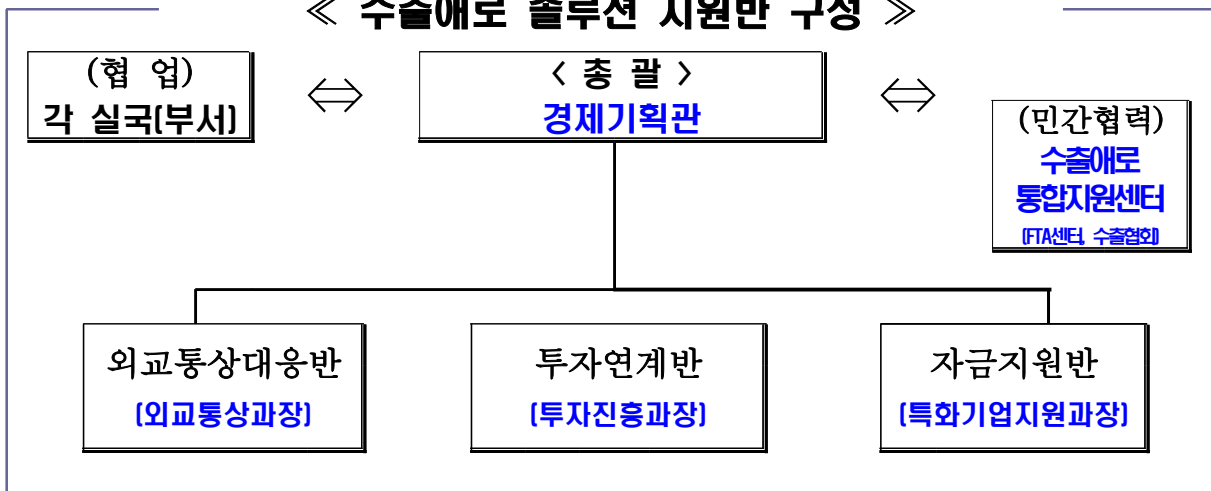
○ 보증 추가공급 : 경기신보 1조원 보증서 발급

○ 향후 추진계획 : 자금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 검토

□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 운영 강화

- (수출애로 해소) 수출애로 지원대책 논의 등 민간합동 비상체계 가동
 - 운영기간 : 상시운영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응 운영강화
 - 설치장소 : 道(외교통상과), 경기FTA활용지원센터, 경기도수출기업협회
 - 지원대상 : 도내 수출중소기업
 - 주요기능 : 피해기업 통합접수, 긴급지원, 판로개척, 정보제공 등 수출기업 소통창구로 활용
- ※ 피해접수 27건(2.24.기준) : 수출입 18건, 경영애로(자금, 매출 등) 4건, 마케팅 5건,
- (맞춤형 솔루션 제공) 긴급지원, 해외판로 개척 등 도내기업 수출피해 최소화
 - 對中 수출피해기업 수출보험 우선 지원 등
 - 수출기업 200억 특별자금 지원 : 업체당 최대 5억원, 금리 2.8% 고정
 - 경기비즈니스센터(GBC), G-FAIR, 통상촉진단 등 수출 확대 적극 지원 ('20년 149억원 예산 확보)

《 수출애로 솔루션 지원반 구성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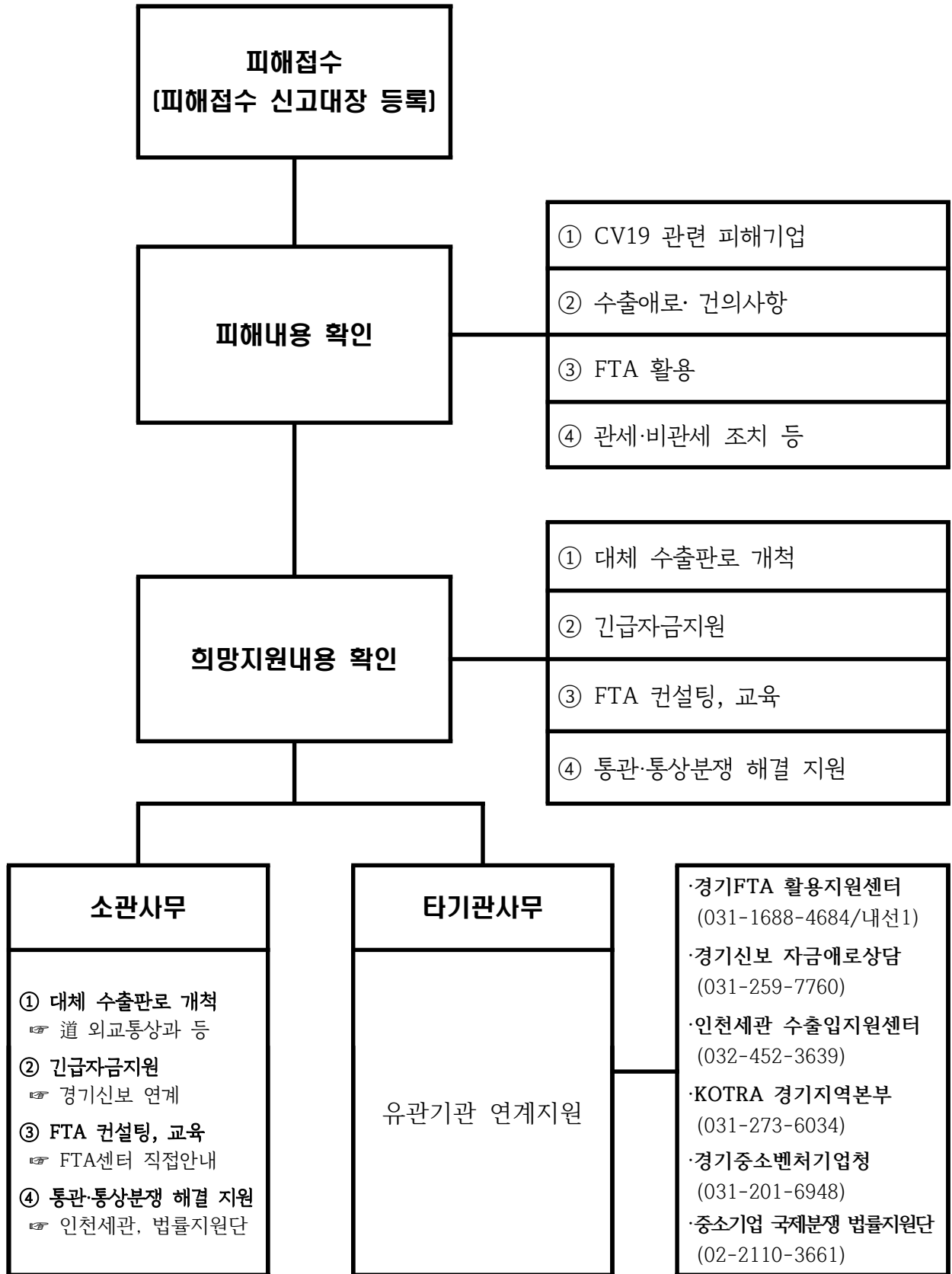


- (일일 보고체계 가동) GBC 소재 각국 동향 및 바이어 등의 움직임 파악
 - 道-경과원-GBC 간 화상회의 개최 및 GBC 국가별 시장동향 모니터링
 - 특히, 중국내 GBC 직원과 기업인 현황 점검(동향, 안전사항 등)

도내기업의 수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관 총력대응 체재 가동

참고 1

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 운영절차



5

공공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세 감면·징수유예 검토

□ 지방재정 상반기 60%이상 신속집행 및 공용물품 조기구매로 지역경제 침체 리스크 최소화

- 최근 5년내 최고수준인 상반기 집행률 65.3%를 목표로 신속한 예산 집행 실시
- ※ 道 본청 자체목표 상향 : 65.0% ⇒ 65.3%(13조 7,638억원, 631억원↑)

구 분	예산액(억원)		대상액(억원)	목표액(억원)	목표율
합 계	890,498		440,224	268,264	60.9%
道	소 계	349,328	227,772	147,272	
	본 청	321,347	210,780	137,638	65.3%
	공기업	27,981	16,992	9,634	56.7%
시·군	541,170		212,452	120,992	57.0%

《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8대 지침》

- ① 긴급입찰, ② 선금급 집행 활성화, ③ 일상감사·계약심사·적격심사 기간 단축
- ④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, 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예외
- ⑥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, ⑦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
- ⑧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

[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추가 검토]

○ 지방세 감면 및 취·등록세 연장 등 세제혜택 지원 검토

- (징수유예 등) 감염증 피해자 (병·의원 등)에 지방세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(지방세징수법 제25조, 제105조)
- ※ (절차) 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 / (기간) 6개월 이내, 1회 연장 가능(6개월)
- (기한연장) 취득세 등의 신고·납부기한 연장* 신청 가능(지방세기본법 제26조)
- * (예시)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→ 6개월 이내 연장, 1회 재연장 가능(6개월 이하)
- (지방세감면)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)

□ 공공일자리 확대

- (사업목적)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보호 등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
- (지원대상)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지역 피해업종 종사자, 매출이 급감한 지역소상공인, 민간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업취약계층 등
- 주요사업 내용
 - 중국 관련 근로자 수가 많은 보건의료인력(예:간병도우미) 지원
 - 전통시장 청소, 주차지원 일자리 등 소상공인 지원
 - 하반기 道 공공일자리사업 규모 확대로 취업취약계층 지원
 - 일자리 충격 완화를 위한 일자리 정책 마켓 사업 추가 공모(400백만원)
- (추진계획) 1회 추경예산 확보 및 시·군 사업계획 공모

□ 취업알선 집중지원

- (사업목적) 피해업종 종사자, 소상공인 등의 피해지원, 전직, 공공일자리 연계 등을 위한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
- 주요내용
 - 시·군 협조를 통해 시·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(602명) 활용
 - 건설현장, 요양보호시설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 집중 지원

□ 피해업종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

- (사업목적)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자리 정보 및 연계지원
- 주요내용
 -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많은 시·군 지역에 일자리박람회 우선 지원 ※ 시·군별 일자리박람회 개최비용 지원(최대 500만원, 145백만원)
 - 개최시기는 코로나바이러스 종료 이후 등 적기 개최
 - 문화, 관광업계 등 피해업종 중심으로 박람회 개최하여 취업연계 강화

□ 현 황

- 「경기도 마스크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」에 841건의 소비자 제보가 접수됨 (1.31. ~ 2.21.)
-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취소, 가격인상, 판매중단 등이 대부분
⇒ 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

□ 추진상황

- (정부합동점검) 식약처 주관 정부합동점검 추진 중(1.31~지속)
 - 참여기관 : 식약처, 국세청, 공정위, 경찰청, 관세청 경기도 등
 - 주요점검내용 : 담합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 행위, 비축물량 방출 및 생산확대 독려 등 시장안정화 조치
- (자체현장 지도·점검) 도내 유통업체(도,소매업체)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자체 점검 (2.11~지속)
- (전자상거래업체 점검) 도내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공정위 합동점검 및 도 자체 점검 진행 (2.7~ 지속)
- (피해신고센터 운영) 소비자피해 (주문 취소요구, 사재기, 온라인 쇼핑물 부당 가격인상 등) 신고센터 운영(☎ 031-251-9898) : 1.30.(목) ~ 지속

□ 중앙부처 건의사항

- 긴급수급조정조치 강화 검토
 - 대구 경북 지역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수급문제 심각
 - 전체 생산물량의 일정비율 (예 30% 등)정도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건의
 - ※ 「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」 20.2.12 시행
-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위한 특사경 권한 확대필요
 - 「사법경찰직무법」 개정 건의 (매점매석 행위 단속권한 필요)
 - 현행 법률은 약사법 관련으로 마스크의 제조단계나 효능의 과장 광고만 단속가능

- (지원내용)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신고·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
 - 확진환자, 격리 중인자, 확진환자 발생·경유 사업장,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,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
 - 법인세 등 신고·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, 환급금 조기지급 등
- (지원분야 및 대상) 확진환자, 격리 중인자, 확진환자 발생·경유 사업장,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,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
 - 관광업, 여행업, 공연 관련업, 음식·숙박업, 여객운송업, 병·의원, 도·소매업 등(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)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,
 - ① 확진환자·격리 중인자(업종무관)
 - ② 확진환자 발생·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* 납세자
 - * 경찰인재개발원(아산),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진천) 인근 상권지역
 - ③ 중국교역 중소기업(수출기업, 부품·원자재 수입기업)
 - ④ 중국 현지 지사·공장 운영,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
- (지원내용)
 - 법인세(3월 확정신고) 등 신고·납부기한 연장(최대 9개월)
 - 징수유예(최대 9개월), 체납처분유예(최대 1년)
 - 환급금 조기지급
 - 세무조사 착수유예(연기·중지 포함) 등
- (신청 방법) 국세청 홈택스(온라인), 우편, 방문 접수
 - 온라인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 - 접수처 : 관할 세무서
 - 조사 연기·중지 신청 : 세무조사 사전통지 종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(조사팀)에 '세무조사 연기(또는 중지)신청서'를 제출

□ 국세 지원

- 대상 :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사업장
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, 관광, 여행, 공연, 음식, 숙박업 등

*사치성 유흥업소 제외

- 지원내용

- ① 법인세, 부가가치세 신고, 납부기한 연장 (최대9개월)
- ② 징수(최대9개월)체납처분(최장1년) 집행유예
-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
- ④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담대응반 운영
- ⑤ 담당 연락처 : 국번없이 126 (3번->2번)

□ 지방세 지원

- 대상 :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

- 지원내용

- ①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.납부기한 연장 (6개월 이내, 6개월 재연장 가능)
-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(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)
- ③ 세무조사 유예
- ④ 지방세 감면
- ⑤ 담당 처리관 : 관할 지자체 세정과

□ 관세 지원

- 대상 :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사업장

- 지원내용

- 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(최대1년)
- ② 당일 과세환급, 관세조사 등 유예
-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

- ▶(사업개요)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
 - 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- ▶(특별 지원)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‘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’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
 - 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□ 지원대상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* 중 「고용보험법시행규칙」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 - *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(병·의원 등) 등
 - 또한,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

□추진기간 : '20.1.29. ~「국가 감염병 위기경보」해제 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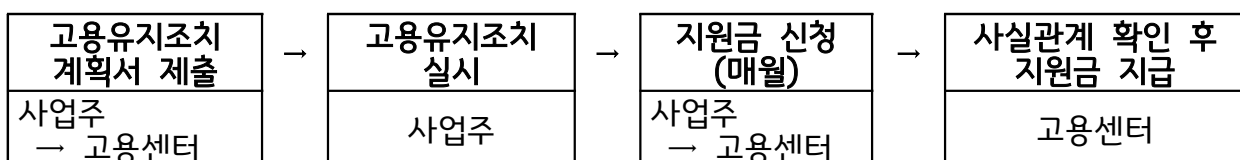
□지원조건

- 전체 근로시간의 20%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 - 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
□구체적 지원내용

-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/3~1/2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 - 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▲우선지원대상기업 2/3, ▲그 외 1/2

□지원(신청)절차



1.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

-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**감염자와 접촉**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
-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(노출기간, 강도, 범위, 발병시기)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

- (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)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,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- (비보건의료 종사자)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,
 -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,
 - 생활공간(가족, 친지)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

【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】

-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·항만 등의 검역관
 - 중국 등 고위험 국가(지역) 해외출장자
 -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
 -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
 -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
- ※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

【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】

-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
 -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
 -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
 -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
 -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

2. 전원요양, 요양연장 및 휴업급여 지급 기준

□ 전원요양

- (위험지역 전원)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신청시 관할 보건소 협의 및 자문의사 자문 후 처리

□ 요양연장 및 휴업급여 지급

- (요양승인기간 중 격리가 종료된 경우) 산재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격리대상자 지정되어 정상적인 요양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

3. 진폐증 정밀진단 및 COPD 진단 등 유예

- (원칙)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비말이 발생하는 폐기능검사가 포함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유예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
 - 진폐근로자의 정밀진단 및 COPD 특별진찰은 대상자 및 진단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가능한 경보 해제시까지 진단 유예

◇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
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: 1357

구분	지원내용	주관기관	연락처	시행일
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명칭)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■ (규모) 200억원 ■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■ (내용)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, 대출기간 5년 (2년거치 3년상환) 	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	042- 363-7130	2.13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명칭) 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 ■ (규모) 4,400억원 ■ (대상) 저신용(6등급이하)·저소득(차상위계층이하) 영세자영업자 대상 ■ (내용) 1인당 2천만원 한도, 최장 5년, 금리 4.5% 이내 	서민금융 진흥원	1397	2.11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명칭)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■ (규모) 500억원→550억원(50억원 확대) ■ (대상) 전통시장(전국 318개)의 영세상인 *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■ (내용) 1인당 1천만원 한도, 만기 최장 2년, 금리 4.5% 이내(상인회 자율 결정) 	서민금융 진흥원	1397	2.11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명칭) 특별자금지원 ■ (규모) 1,000억원 ■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■ (내용) 최대 5억원, 1년(3년까지 연장 가능), 최대 1.0%p 금리감면 	기업은행	1588-2588	2.10
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명칭) 특례보증 프로그램 ■ (규모) 1,000억원 ■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■ (내용)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(5년 이내), 보증비율상향 (85%→100%), 보증료율 0.8% 적용 	지역 신용보증재단	1588-7365	2.13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명칭) 특례보증 프로그램 ■ (규모) 1,000억원 ■ (대상) 신종 CV 피해 기업 ■ (내용)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, 보증비율 상향(85%→95%), 보증료율 1.0% 적용 	기술보증기금	1544-1120	2.13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명칭) 우대보증 프로그램 ■ (규모) 3,000억원 ■ (대상)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■ (내용) 우대 보증 지원, 보증비율 상향(85%→95%), 보증료율 0.2%p 차감, 심사절차 간소화 	신용보증기금	1588-6565	2.6

구분	지원내용	주관기관	연락처	시행일
국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대상) 신종 CV 피해 납세자*(자영업자 등) *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,관광,여행,공연,음식,숙박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 ■ (내용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법인세,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(최대 9개월) ② 징수(최대 9개월)체납처분(최장 1년)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	국세청 징세과 / 관할 세무서	국번없이 126 (3번→2번)	2.5
지방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대상)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■ (내용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·납부기한 연장(6개월 이내, 6개월 재연장 가능)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(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)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	관할 지자체 세정과 (별첨)	2.5
관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대상)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■ (내용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납기연장·분할납부(최대 1년) ② 당일 관세환급,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	관세청 심사정책과	042-481-7863 국번없이 125 (20번→2번)	2.6
카드	<p>피해 우려 영세·중소가맹점(연매출 5억원 이하)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C사)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,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,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* (D사)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, 소비영향 분석 지원,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	금융위 중소기업과	02-2100-2983	2.10

▷ 마스크 수급안정화 지원(중기부 판로정책과 042-481-4483)

▷ 불공정거래행위 감시(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)

: 금융위(자본시장조사단 02-2100-2543),
금감원(자본시장조사국 조사1팀 02-3145-5635)

▷ 금융애로상담(「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」내 전담창구 운영(2.7))

: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 → 6번)

▷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(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,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)

: 관세청(통관기획과 042-481-7814)

▷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(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,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)

: 관세청(통관기획과 042-481-7814)

참고**중기부 지방청 연락처**

지방청	연락처	주소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소상공인과	02-2110-6343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
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소상공인과	051-601-5138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
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소상공인과	053-659-2263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소상공인과	062-360-9161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소상공인과	031-201-6932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소상공인팀	032-450-1145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소상공인과	042-865-6141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지역혁신과	052-210-0046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지역혁신과	033-260-1621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지역혁신과	043-230-5321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소상공인팀	063-210-6432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	
지역혁신과	055-268-2549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
참고**지방세 지원 관련 시·도 연락처**

연번	시·도	부서명	연락처	팩스번호
1	서울특별시	세무과	02-2133-3396	02-2133-1034
2	부산광역시	세정담당관	051-888-2134	051-888-2129
3	대구광역시	세정담당관	053-803-2505	053-220-2490
4	인천광역시	지방세정책담당관	032-440-2542	032-440-8702
5	광주광역시	세정담당관	062-613-2522	062-613-2529
6	대전광역시	세정과	042-270-4243	042-270-4239
7	울산광역시	세정담당관	052-229-2624	052-229-2619
8	세종특별자치시	세정담당관	044-300-3512	044-300-3510
9	경기도	세정과	031-8008-4188	031-8008-4189
		조세정의과	031-8008-2468	031-8008-2289
10	강원도	세정과	033-249-2881	033-249-4081
11	충청북도	세정과	043-220-2755	043-220-2759
12	충청남도	세정과	041-635-2341	041-635-3047
13	전라북도	세정과	063-280-2315	063-280-2319
14	전라남도	세정과	061-286-3647	061-286-4759
15	경상북도	세정담당관	054-880-2211	054-880-2190
16	경상남도	세정과	055-211-3710	055-211-3719
17	제주특별자치도	세정담당관	064-710-6885	064-710-6889

소개	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는 해외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늘리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화상상담을 무료 지원
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명 : 코로나19 대응 상시 화상상담 지원사업 ○ 기간 : 2020. 2. 12(수) - 종료시점은 별도 공지 ○ 국내기업 1차 신청기간 : 2020.2.12(화) ~ 2.17(월) ○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인해 수출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 ○ 장소 : KOTRA 사이버무역상담실 (KOTRA 본사 2층 소재), KOTRA 지방지원단, 국내기업 자사 사무실 (화상상담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) ○ 지원골자 : 해외무역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 지원 ○ 규모(목표) : 국내기업 200개사, 해외바이어 150개사 간 300건 상담지원 ○ 진행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단계) 국내업계의 화상상담 신청 (아래의 참가 신청란 참고) - 2단계) 해외무역을 통해 시장성 평가 후 바이어 발굴 및 매칭 (1차 신청 마감 후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상담진행) - 3단계) 사후관리 (바이어와 추가상담 등 사후관리 실시) ○ 사업주관 : KOTRA 혁신성장본부 (상시 화상상담 지원데스크)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○ 바이어와의 1:1 화상상담 지원 (화상상담 솔루션 Zoom 접근권한 무료제공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화상상담 솔루션에 익숙치 않은 기업은 KOTRA 본사(사이버무역상담실) 또는 KOTRA 지방지원단 사무실에서 진행 ○ 바이어의 희망언어에 맞춰 통역 무료 지원
참가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차 신청기간 : 2020.2.12(화) ~ 2.17(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차 신청은 2020.2.18(화) ~ 2.24(월) ○ 온라인을 통해 (아래 링크)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창구 : http://naver.me/GUkI3xOl (Naver 회원가입 불필요) ○ KOTRA 회원가입을 안한 기업은 회원가입 (기업회원) 후 신청 요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비회원은 상기 창구로 신청 시 지원 불가 ○ 구체적인 타깃지역 및 상담품목 기입 요망
문의처	02-3460-7432

소개	KOTRA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 대상으로 대체공급처 발굴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
개요	<p>1. 대체공급처 발굴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 * 국내판매를 위한 단순 완제품 수입처 조사는 제외하며, 향후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처 발굴 지원 서비스입니다. ○ 지원서비스 :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○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희망국가별 5개 이내의 공급처 기업개요, 연락처, 제품사양 등 조사 - 현장검증 등을 위한 현지활동 지원 ○ 참고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이 불가하게되어 피해를 받아 실제 대체공급처 발굴이 시급한 기업의 참여를 요청드리며, 재고가 충분하나 단순히 미래를 위한 공급처 리스트 확보 목적의 신청은 지양 요청 <p>2.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대상 : 계약완료 후 중국 바이어에게 선적 예정되어 있는 물품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유통기한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 재고를 제3국으로 긴급 처분 수출 희망 우리기업(신청서 접수후 해당사항 종합 검토후 지원여부 결정 및 안내 예정) * 수출계약 완료 후 중국으로 선적을 앞두고 있던 물량에 대해 코로나19로 수출이 금지되어 해당 재고물품을 제3국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목적으로, 상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바이어 발굴 요청은 유료서비스(해외시장조사-사업파트너연결지원) 이용을 안내드립니다. ○ 지원서비스 :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○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희망국가별 5개 이내의 바이어 기업개요, 연락처, 제품사양 등 조사 - 현장검증 등을 위한 현지활동 지원 <p>3. 중국 거래처 상담대행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대상 :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출장이 취소되거나 바이어 연락두절 등 애로로 인해 중국 거래처 교신 희망 우리기업 ○ 지원내용 : 중국지역 무역관을 통한 우리기업 거래처 상담대행 및 교신지원
지원내용	<p>1. 서비스 수수료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시장조사 : 중소중견기업 무료, 대기업은 기존과 동일 ○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: 중소중견기업 50% 할인, 대기업은 기존과 동일 <p>2. 출장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체공급처 발굴 후 현지출장 시행시 열린무역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역관에서 무료로 사무공간 및 상담 서비스 제공

2.7~12일 총 601건 799.2억원 금융지원

1. (금융위)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방안(총 2조원)

◇ 지원대상: 코로나19 직·간접 피해기업

1) 신규자금 지원

지원기관	지원내용	지원한도(원)
① 산은	최대 중소 50억원, 중견 70억원	3,000억
② 기은	최대 5억원, 최대 1.0%p 금리↓	1,000억
③ 신보	보증비율 ↑(85%→90%), 보증료를 최대 0.2%p ↓	3,000억
④ 수은	최대 중견 0.3%p, 중소 0.5%p 금리↓	1조
⑤ 중진공	최대 10억원	250억
⑥ 기보	최대 3억원, 보증비율 ↑(85%→95%), 보증료를 1.0% 고정	1,050억

2) 기존 금융계약 연장

○ 산·기은, 수은, 신·기보, 중진공의 대출·보증 만기연장(최장 1년)

3) 수출입 금융지원

○ (수출) 매입의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, 부도등록 유예(1개월)
○ (수입)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(최장 1년)

4) 정책금융 조기집행: 약 230조원 조기 집행

5)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

지원기관	지원내용	지원한도(원)
⑦ 소진공	최대 7천만원	200억
⑧ 지신보	최대 7천만원, 100%보증, 보증료를 ↓(1.0%→0.8%)	1,000억
⑨ 기은	최대 1억원, 1.5% 초저금리	1.2조
⑩ 마소금융	최대 2천만원, 4.5% 금리	4,400억

2. (중기부) 「중소·소상공인 지원방안」 중 금융지원방안

1. 중소기업 분야

1) 신규자금 지원

지원기관	지원내용	지원한도(원)
⑤ 중진공	최대 10억원, 0.5%p 금리↓	250억
⑥ 기보	최대 3억원, 보증비율 ↑(85%→95%), 보증료를 1.0% 고정	1,050억

2) 기존 금융계약 연장

○ (만기연장) 1년, (상환유예) 최장 9개월

3) 매출채권 보험 활용 거래안정성 보완

○ 인수규모 확대(2조원 → 2.2조원), 가입보험료 인하(피해업종 대상 10%↓), 보험금 신속지급(15일→10일)

2. 소상공인 분야

1) 신규자금 지원

지원기관	지원내용	지원한도(원)
⑦ 소진공	최대 7천만원, 1.75% 고정금리	200억
⑧ 지신보	최대 7천만원, 100%보증, 보증료를 ↓(1.0%→0.8%)	1,000억

2) 기존 금융계약 연장

○ (만기연장) 1년 (소진공, 지신보)

○ (지자체 협력) 재보증비율 상향(50%→60%)

○ (중기중앙회)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한시적 인하(3.4%→2.9%)

3. 코로나19 범용지원 프로그램(총 14.7조원)

1) 중소·중견기업 (9.9조원)

지원내용	지원한도(원)
설비투자 범용 프로그램(산·기·수은) * 최저 1.5% 수준	산은 2조원 기은 2조원 수은 0.5조원
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(산·기은) * 최대 0.7%p 금리 감면	산은 2조원 기은 1조원
환경·안전투자(산·기은) * 1.0%p 금리 감면	산은 0.75조원 기은 0.75조원
시설투자 특별은행대출 프로그램(산은) * 최대 0.45%p 금리 감면	0.5조원
부품소재기업 혁신지원대출(기은) * 최대 1.0%p 금리 감면	0.2조원
서비스산업 지원자금(산은) * 운영자금, 최대 0.5%p 금리 감면	0.2조원

2) 소상공인·자영업자 (0.9조원)

지원내용	지원한도(원)
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(기은) * 최대 1.0%p 금리 감면	0.5조원
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(신·기보) * 보증료 0.3~0.5%p차감, 보증비율 95~100%	0.4조원

3) 투자 프로그램 (3.9조원)

지원내용	지원한도(원)
성장지원펀드(산은)	2.5조원
소부장 전용펀드(산은)	0.4조원
주력산업 P-CBO(신보)	1.0조원